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기제공무원(청사방호)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청사방호) 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 내용
청사방호	지방방호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의회 청사방호 및 시설보안 관리 ○ 의회 방청 관리 ○ 의회 방문객 안내 및 주차시설(시스템)관리 ○ 의전행사(운전 등) 및 의회업무 지원 등 ○ 전화 민원응대 및 민원처리 지원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 관리 ○ CCTV등 관리 ○ 환경미화 용역 관리, 청사방역 업무 ○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시스템 용역관리 ○ 기타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등

※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예정일 : 2026. 7. 1.(예정)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기준
청사방호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소지자 - [별첨1]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복수 제출시 단일 종목 가장 높은 단수 1개만 인정 - 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실무경력 인정범위

채용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청사방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 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예상 연봉액 : 28,943천원

※ 신규 임용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결정

※ 주당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6.2.(화) ~ 6.5.(금) <평일 09:00~18:00> (3일간)

※ 점심시간(11:30~13:00) 및 공휴일[2026. 6.3.(수)]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 (서대문구 연희로 36길 49, 1층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가능)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1차 시험(서류전형)		2026. 6. 8.(월) ~ 6. 15.(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6. 16.(화) 예정	
인적성 검사		2026. 6. 16.(화) ~ 6. 18.(목)	(별도 안내)
2차 시험 (면접시험)	임기제 9급	2026. 6. 24.(수) 예정	서대문구의회 (면접시간은 별도 안내)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026. 6. 25.(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서대문구 및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하여 임용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인적성 검사 : 개별 통보

-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서대문구 및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면접합격자 발표 이후 시행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8급 - 5,000원
- 문의 :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2번창구) ; 330-1150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 원서접수처(서대문구의회)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2.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제공 · 이용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8. 졸업증명서 1부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하고,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10.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1.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단 응

시수수료는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및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02-330-383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별첨1] 우대요건 해당 무도 인정단체 현황.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

별첨1

우대요건 해당 무도 인정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6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 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